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9.16(화) 10:00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학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6조 등)

5. 검토의견

- ‘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현재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